

TRADEMARK ASSIGNMENT COVER SHEET

Electronic Version v1.1
Stylesheet Version v1.2

ETAS ID: TM343262

SUBMISSION TYPE:	NEW ASSIGNMENT
NATURE OF CONVEYANCE:	Division (Split)
SEQUENCE:	2

CONVEYING PARTY DATA

Name	Formerly	Execution Date	Entity Type
Kolon Corporation		01/05/2010	CORPORATION: KOREA, REPUBLIC OF

RECEIVING PARTY DATA

Name:	Kolon Corporation
Street Address:	11 Kolon-ro
City:	Gwacheon-si, Gyeonggi-do
State/Country:	KOREA, REPUBLIC OF
Entity Type:	CORPORATION: KOREA, REPUBLIC OF
Name:	Kolon Industries, Inc.
Street Address:	11 Kolon-ro
City:	Gwacheon-si, Gyeonggi-do
State/Country:	KOREA, REPUBLIC OF
Entity Type:	CORPORATION: KOREA, REPUBLIC OF

PROPERTY NUMBERS Total: 3

Property Type	Number	Word Mark
Registration Number:	3636022	KOLON SPORT
Registration Number:	3636072	1492 MILES
Registration Number:	3636071	SERIES; URBAN GENERATION

CORRESPONDENCE DATA

Fax Number: 7035185499

Correspondence will be sent to the e-m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using a fax number, if provided;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via US Mail.

Phone: 703-535-7340

Email: yshgroup@ipfirm.com

Correspondent Name: Yoon S. Ham

Address Line 1: 2318 Mill Road

Address Line 2: Suite 1400

Address Line 4: Alexandria, VIRGINIA 22314

ATTORNEY DOCKET NUMBER: 5734-G001

OP \$90.00 3636022

NAME OF SUBMITTER:	Yoon S. Ham
SIGNATURE:	/Yoon S. Ham/
DATE SIGNED:	06/02/2015
Total Attachments: 7 source=2nd_doc_Division#page1.tif source=2nd_doc_Division#page2.tif source=2nd_doc_Division#page3.tif source=2nd_doc_Division#page4.tif source=2nd_doc_Division#page5.tif source=2nd_doc_Division#page6.tif source=2nd_doc_Division#page7.tif	

DECLARATION

I, Pilgu JEONG, do solemnly and sincerely declare that that I am conversant with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ttachment English version is a full, true and faithful translation made by me of the Commercial Register of Kolon Corporation.

Dated this 2nd day of June, 2015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consisting of stylized Korean characters, positioned above a horizontal line.

Pilgu JEONG

Commercial Register (Adjustments included)**[for submission]**

Registry No.	035195
Registration No.	110111-0030528

Company Name: Kolon Corporation	Revised on
	Registered on
Kolon Corporation	Revised on December 31, 2009
	Registered on January 5, 2010
Address (Head Office): 11 Kolon-ro, Gwa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Road name address of October 31, 2011
	Registered on March 21, 2014

Details

... Omitted ...

1. Merger and Acquirement

Merged FNC Kolon Corporation of 45 Mugyo-dong,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Changed on August 4, 2009 Registered on August 4, 2009

... Omitted ...

1. Dividing Company

Divided Kolon Corporation and established Kolon Industries, Inc. of Kolon Tower, 1-23, Byeoryang-dong, Gwa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Registered on January 5, 2010

... Omitted ...

Office fee of 1,000 Won paid

--- Blank ---

Registry Office under Jurisdiction of Registry Section of Anyang Branch of Suwon District Court /
 Issuing Registry Office: Central Register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is is a true copy of the Transcript of the Commercial Register. [Invalid registry items and items not requested were omitted.]

Dated this 2nd day of June, 2015

Central Regist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of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Chief Officer of Computer Operation (Seal)

* The struck portion has been cancelled, altered and/or changed. * The Register may be printed in color.

[Issuance via the Internet] Forgery or alternation of this document may be confirmed by scanning the barcode on the bottom of this document or by inputting the Issuance Confirmation number in the Issuance Confirmation menu of the Internet Registry (<http://www.irs.go.kr>)

Confirmation using the Issuance Confirmation Number is available five time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issuance date.

Issuing Confirmation No. 1955-AAPQ-NMFP
 Issued this 2nd day of June, 2015 1/1

TRADEMARK
REEL: 005543 FRAME: 0679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035195	
등록번호	110111-0030528	
상 호	주식회사 코오롱 (KOLON CORPORATION)	2009.12.31 변경 2010.01.05 등기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4.03.21 등기

기 타 사 항

1. 우선주식의 내용 :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식
 - 1) 우선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임
 - 2)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1%를 더 배당함.
단,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3) 차후 유무상 증자시 우선주식에는 동일한 종류의 우선주식을 배정함. 단, 관계법령 또는 재경원, 증권관리위원회등 관계정부기관의 명령, 제한에 의하여 우선주식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우선주식 보유주주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1. 명의개서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영업소

증권예탁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영업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증권예탁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영업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2년 09월 11일 변경 2002년 10월 01일 등기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영업소 : 주식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2
 2003년 10월 22일 변경 2003년 10월 30일 등기

1. 대구 달서구 감삼동 510 고려나일론 주식회사를 합병
 1995년 09월 30일 등기

신형우선주식의 내용

- (1)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9%배당함
-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단순참가시켜 배당함
-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사업년도에 있어서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0003540051921056300511101245301R9DARFEB1F819670917 1 발행일:2015/06/02 발급확인번호 1955-AAPO-NMFP



등기번호

035195

다음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우선주식은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됨.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1999년 05월 12일 등기

1.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규정

1.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수량 및 소각의 방법등 이익소각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2001년 03월 09일 설정 2001년 03월 28일 등기

1.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규정

1.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수량 및 소각의 방법등 주식소각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2003년 03월 14일 변경 2003년 03월 28일 등기

2013년 03월 22일 말소 2013년 03월 22일 등기

1. 흡수합병

파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유화 주식회사를 합병

2007년 06월 04일 변경 2007년 06월 04일 등기

1. 회사분할

주식회사 코오롱을 분할하여 경기도 파천시 별양동 1-23에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주식회사를 설립

2008년 03월 03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 에프앤씨코오롱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2009년 08월 04일 변경 2009년 08월 04일 등기

1. 전환주식

1. 본 회사는 제6조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본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권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 규정을 준용한다.

발급확인번호 1955-AAPQ-NMFP

00003540051921056300511101245301B9DABFBC1F819670917 1 발행일:2015/06/02

- 2/5 -

TRADEMARK

REEL: 005543 FRAME: 0681

등기번호

035195

2009년 12월 31일 변경 2010년 01월 05일 동기

1. 본 회사는 제6조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발행할 전환주식의 수는 오백만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 주식의 총 발행가액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같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 수를 변경할 수 있다.
3.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2 규정을 준용한다.
5.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 정관 제6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2013년 03월 22일 변경 2013년 03월 22일 동기

1. 상환주식

1. ~~본 회사는 제6조 또는 제6조2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상환주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의 말일에는 관존하는 당해 상환주식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4.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본 회사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5.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제6조2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정~~

발급확인번호 1955-AAPQ-NMFP

000035400519210563005111012453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2015/06/02

- 3/5 -

TRADEMARK

REEL: 005543 FRAME: 0682

등기번호	035195
------	--------

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변경 2010년 01월 05일 등기

1. 본 회사는 제6조 또는 제6조2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 또는 전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상환주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의 말일에는 잔존하는 당해 상환주식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오백만주로 하며,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물,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4.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본 회사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5.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 주주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제6조2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013년 03월 22일 변경 2013년 03월 22일 등기

1. 회사분할

회사를 분할하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에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를 설립
2010년 01월 05일 등기

1. 관할전속

2013년 06월 10일 대법원규칙 제 2471 호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과천동기소로부터 이 관할로 전속

2013년 06월 10일 등기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이하 여백 ---

관할동기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동기소 / 발행동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발급확인번호 1955-AAPO-NNFP

00003540051921056300511101245301B9DABFEB1F819670917 1 발행일:2015/06/02

- 4/5 -



TRADEMARK

REEL: 005543 FRAME: 0683

등록번호	035195
------	--------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15년 06월 02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1955-AAPQ-NMFP

000035400519210563005111012453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2015/06/02

- 5/5 -



TRADEMARK